

#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 보건의료원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장 직급채정 협의 결과반영 및 부서와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 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774명 ⇨ 785명 (증 11명)
  - 집행기관의 총수 : 762명 ⇨ 771명 (증 9명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⇨ 14명 (증 2명)

○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부 조정(안 별표 3)

- 총 계 : 774명 ⇨ 785명 (증 11명)
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계 : 744명 ⇨ 753명 (증 9명)
  - 4급 : 3명 ⇨ 4명 (증 1명)
  - 4~5급 : 1명 ⇨ 0명 (감 1명)
  - 5급 : 32명 ⇨ 33명 (증 1명)
  - 6급 이하 : 708명 ⇨ 716명 (증 8명)
- 연 구 직 계 : 5명 (변동없음)
- 지 도 직 계 : 24명 → 26명 (증 2명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2022년 평창군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 
보건의료원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 
보건의료원장의 직급을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고  
보건의료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담당 신설로 인한  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기존 774명에서 785명으로 11명 증원하였으며  
안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 
집행기관 정원은 762명에서 771명으로 9명 증원,  
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기준인건비 정원반영과 보건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74명”을 “78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762명”을 “77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2명”을 “14명”으로 한다.  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**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785	785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53	753				
4급	4	3		1		
4~5급						
5급	33	16	2	6	1	8
6급 이하	716	716				
전문경력관 소계						
연구직 계	5	5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5	5				
지도직 계	26	26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25	25				
별정직 계	0	0				
6급상당		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774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62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2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785명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771명</u></p> <p>2. ----- <u>14명</u></p>